

식품의약품안전처 주 의 요 구

제 목 병·의원 등 사용중단 반품 마약류 승인내역 보고 소홀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

내 용
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(이하 “마약류”라 한다)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, 마약류취급자²⁰⁸⁾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류를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.

또한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시행일: 2012. 6. 27)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소매업자(약국)²⁰⁹⁾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(병·의원)²¹⁰⁾가 마약류를 마약류도매업자²¹¹⁾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그 승인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, 시·도지사는 마약류 반품 승인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²¹²⁾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따라서 강원도는 2013. 1.부터 2015. 12.까지 마약류 소매업자 또는 마약류

208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마약류 취급 권한을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

209) 「약사법」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

210)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또는 「수의사법」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

211) 마약류소매업자, 마약류취급의료업자,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

212) 식약처는 ‘시·도지사는 마약류 반품 승인 결과를 매 반기 종료 후 익월 이내에 보고’ 토록 통보(식약청 ○○○관리과(현 ○○○○과)-00000, 2012. 0. 00. 및 식약처 ○○○○-0000, 2016. 0. 00.)

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 반품 양도승인을 신청하여 승인한 총 101건에 대해서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기종료 후 익월 이내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.

그런데도 강원도 ○○○○과에서는 반품 승인한 마약류 총 101건 중 36건에 대해서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, 65건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았다.

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

앞으로 마약류 반품 승인을 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매 반기 종료 후 익월 이내에 보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